주식회사 OOO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□□회사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직매입거래계약(이하 "이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"갑"과 "을" 간 상품의 직매입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.

제2조 [기본원칙]

- ① "갑"과 "을"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 [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]

"갑" 과 "을"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.

- 1. 상대방에게 금품, 향응,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2.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.
- 3. "갑"은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,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.

제4조 [계약기간]

-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년 _월 _일부터 ___년 _월 _일까지로 한다. 단,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,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 "갑"은 "을"과 "을"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"을"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③ "갑"은 위 ③항을 포함한 "을" 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"을"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,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"을"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"갑"이 "을" 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"을"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()년 동안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.
- 1.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
- 2. 하자책임·보증에 관한 사항
- 3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제5조 [상품발주서]

- ① "갑"은 [별지]의 상품발주서에 상품의 종류·수량·가격·납품장소·납품기일을 기재하여 "을"에게 상품을 발주한다.
- ② "갑"은 상품을 발주하는 즉시 "갑"의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

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)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상품발주서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.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)을 "을"에게 주어야 한다.

- ③ "갑"은 상품발주서 외에 이에 준하는 매입전표,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상품을 발주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서면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④ "갑"은 상품발주서가 납품기일 이전에 "을"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상품발주서가 "을"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상품을 제조·주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 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

- ① "을"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"갑"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② "갑"은 상품의 품질, 규격,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"을"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"을"에게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.
- ③ "갑"은 "을"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"을"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"을"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"갑"에게 제출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"을"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"갑"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

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⑥ "을"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하고,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()일 내에 "을"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. 단, 지정일 내에 "을"이 불합격된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, "갑"은 "을"의 부담으로 "을"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 [상품의 납품]

- ① "갑"이 제5조의 상품발주서를 작성하여 "을"에게 교부하는 경우, "을"은 지정된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"갑"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에게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, 「대외무역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상표법」, 「특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표시・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"을"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6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"을"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.
- 1. 납품받은 상품이 "을"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
- 2.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3. 납품받은 상품이 "갑"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
- 4.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"갑"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④ "을"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"갑"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- 1. "을"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2. "을" 이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
- ⑤ "갑"은 납품과 관련하여 "을"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, 이 경우 "을"이 "갑"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"갑"은 "을"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 - 1.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
- 2.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
- 3.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화원하지 아니하거나 화원을 지연하는 행위

제8조 [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]

- ① "갑"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()일 이내에 현금,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.
- ② "갑"은 "을"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,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"갑"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"을"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·수산물·축산물로서 건조·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(이하 "신선농·수·축산물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"갑"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(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)에만 감액할 수 있다.

- 1.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
- 2. "을"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된 경우
- 3.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④ "갑"은 "을"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"을"이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"갑"은 공제 내역을 "을"에게 지급 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8조의2 [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]

-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,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※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(예시: 공급단가는 을이 결정한다.)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경우 이 조항 제외 가능
- 1.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,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2.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
-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갑은 계약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.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

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-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 경우
 - 2.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

제9조 [상품의 반품]

- ① "갑"은 정당한 사유 없이 "을"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"을"에게 반품(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 - 1. 납품받은 상품에 "을"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,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
 - 2.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
 - 3.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"갑"이 부담하고 "을"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
 - 4. 명절용 선물세트,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(신선농·수·축산물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:(
- ※ 반품조건 반품기한, 반품수량의 상한, 반품장소,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
- 5. 신 · 구 상품의 교체,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"을"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

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. 이 경우, "을"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"갑"에게 제출한다.
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()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납품일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선농·수·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"갑"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(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)에만 반품할 수 있다.

제10조 [판매장려금]

① "갑"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"을"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.

명칭	종류	지급목적	지급시기	지급횟수	판매장려금률(액)
판매 인센티브	(예시) 성과장려금	"갑"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 매 시 판매독려	성과 달성 시	연 ()회	초과판매액의 ()%

-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률(액)의 결정기준·결정절차 및 변경사유·변경기준·변경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.
 - 1. 결정기준:
 - 2. 결정절차:
 - 3. 변경사유:
 - 4. 변경기준:

5. 변경절차:

- ※ 결정기준 및 변경기준 "갑"과 "을"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, 거래기간, "갑"의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결정·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기재
- ※ 결정절차 및 변경절차 담당 MD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절차, 협의 불성립 시 재협의절차, 결정된 판매장려금 수준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기재
- ※ 변경사유 매출액의 증감, 시장상황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인상/인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
- ③ "갑"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"을"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, "을"에게 제1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, 물품, 용역,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[판매촉진행사 참여 등]

-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(이하 "판촉행사"라 한다)을 하려면 "갑"과 "을"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(이하 "판촉행사약정서"라 한다)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.
 - 1. 판촉행사의 명칭 · 성격 · 기간
 - 2.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
 - 3.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
 - 4.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"갑"과 "을"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(이하 이 조에서 "예상이익"이라 한다)의 비율
 - 5.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(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, 이하 "판촉비용"이라 한다)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
- ② "갑"은 정당한 사유 없이 "을"에게 "을"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"을"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.

-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"갑"과 "을"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"을"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을"이 "갑"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이 상호 혐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제12조 [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]

"갑"은 "을"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1. "을"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
- 2.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
- 3. "을"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상품원가,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- 5.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

제13조 [손해배상]

"갑" 또는 "을"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,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4조 [지식재산권 등]

- ① "을"이 "갑"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 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, 초상권 등)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에게 납품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"갑"또는 "을"과 제3자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"갑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·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"을"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, 이로 인하여 "갑"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5조 [상표관련특약]

- ① "을"은 "갑"에게 "을"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"갑"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.
- ② "을"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,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"을"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, "갑"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. 이 경우 "을"은 "갑", "갑"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6조 [제조물책임]

"을"이 납품하는 상품이 「제조물책임법」상 결함으로 인하여 "갑"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, "을"은 「제조물책임법」에 따라 "갑"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6조 [궈리·의무의 양도금지]

"을"은 "갑"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. 단,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"갑"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 [통지의무]

- ① "갑"과 "을"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주소, 상호,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
 - 2.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 - 3.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 - 4. 그 밖에 "갑"과 "을"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.

제18조 [비밀유지]

- ① "갑"과 "을"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의무는 "갑"과 "을"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()년간 계속된다.

제19조 [계약해지]

① "갑"과 "을"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

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
- 2. "갑" 또는 "을"이 발행한 어음·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, "갑" 또는 "을" 자신에 의한 회생·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,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3.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4. "갑" 또는 "을"의 주요재산(이 계약에 따라 "을"이 "갑"에 대하여 갖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5.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,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6. "을"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, "을"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7.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"갑" 또는 "을"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,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.
-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0조 [상계]

제19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22조 [분쟁해결 및 재판관할]

-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"갑"과 "을"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, "갑"과 "을"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-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"갑"과 "을"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.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합법원을 정할 수 있다.
- ※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
- ③ "갑"과 "을"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.

중재기관: (

중재규칙: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

제23조 [계약의 효력]

- ① "갑"과 "을"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,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"갑"과 "을"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,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"갑"과 "을"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"갑"과 "을"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0000년 00월 00일

(갑) 주소 : 00시 00구 00동 (을) 주소 : 00시 00구 00동

상호 : 주식회사 000 상호 : □□회사

대표이사 : 000(인) 대표자 : 000(인)

상 품 발 주 서

"을"은 "갑"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.

1. 납품장소 :

2. 납품기일 : 20 년 월 일까지

3. 납품 대상 상품 내역

(단위: 개, 원)

상품명	수량	공급단가(VAT 별도)	계약금(VAT 별도)

1	71	디	사항
4	-/1	比	사양

1				

0000년 00월 00일

(갑) 주소 : 00시 00구 00동

상호 : 주식회사 000

대표이사 : OOO(인)